

상표·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서

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상표·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한다.

당사자

갑(허락권자)	상호(성명)		사업자번호/생년월일	
	주소		연락처	
을(사용자)	상호(성명)		사업자번호/생년월일	
	주소		연락처	

허락 대상의 표시

구분	명칭	등록번호/출원번호	비고

사용 조건

사용지역		독점 여부	
사용기간		사용매체	
사용료		정산일	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위 상표·저작물을 을이 위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허락 대상)

허락 대상은 위 표에 기재된 상표 및 저작물에 한하며, 을은 그 외의 갑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.

제 3 조 (사용 범위)

을은 위 사용지역, 사용기간, 사용매체의 범위 내에서만 허락 대상을 사용할 수 있다.

독점 여부가 '독점'인 경우 갑은 동일한 범위에서 제 3자에게 중복하여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사용료와 정산)

을은 위 사용료를 위 정산일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.

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을은 정산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.

제 5 조 (품질 유지와 표시 의무)

을은 허락 대상의 품질과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며, 갑이 정하는 표시 기준(로고 규격, 출처 표기 등)을 준수한다.

제 6 조 (제 3 자 권리 침해)

갑은 허락 대상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. 을의 사용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 3 자와의 분쟁은 을이 책임진다.

제 7 조 (재허락 금지)

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허락 대상의 사용권을 제 3 자에게 재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제 8 조 (계약 종료 후의 처리)

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허락 대상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, 보유하던 관련 자료·표시물을 갑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.

제 9 조 (손해배상)

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제 10 조 (관할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20 년 월 일

갑(허락권자) : (서명 또는 인)

을(사용자) : (서명 또는 인)

※ 상표권·저작권의 등록 현황과 침해 여부는 특허청·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, 구체적 법률 판단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.